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610
----------	-------

발의연월일 : 2026. 6. 29.

발 의 자 : 김위상·권성동·조지연
윤한홍·김종양·김대식
박성훈·안철수·신성범
김선교·송석준·김도읍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태양광, 풍력 등 초기 보급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발전 효율 저하 및 관리 비용 증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재생에너지 설비 폐기물의 순환이용 지원이나 성능 개선 추진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교체하거나 설비의 안전성, 설비용량 등을 고도화하는 성능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태양광 패널·풍력 블레이드 등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대용량의 재생에너지를 저장·제어하는 에너지저장장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이용에 관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7호의2, 제10조제16호·제17호 및 제30조의5 신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462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
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태양광 패널·풍력 블
레이드 등을 말한다), 대용량의 재생에너지를 저장·제어하는 에너
지저장장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이용에 관한
지원 방안

제10조제16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재생에너지 설비·에너지저장장치 폐기물 재활용 및 순환이용
기술개발 지원

17. 재생에너지 설비·에너지저장장치 폐기물 재활용 및 순환이용
기업 지원

제3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5(재생에너지 설비 성능개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물
및 주요 부품의 이력관리, 재활용 및 순환이용, 입지 여건 및 환경

성 등을 고려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교체하거나 설비의 안전성, 설비용량 등을 고도화하는 성능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 15. (생략)

<신설>

<신설>

16. (생략)

<신설>

-----.

1. ~ 15. (현행과 같음)

16. 재생에너지 설비·에너지저장장치 폐기물 재활용 및 순환이용 기술개발 지원

17. 재생에너지 설비·에너지저장장치 폐기물 재활용 및 순환이용 기업 지원

18. (현행 제16호와 같음)

제30조의5(재생에너지 설비 성능개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물 및 주요 부품의 이력관리, 재활용 및 순환이용, 입지 여건 및 환경성 등을 고려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교체하거나 설비의 안전성, 설비용량 등을 고도화하는 성능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